

언론분쟁에 나타난 취재관행의 문제

남 재 일

(대전중재부 중재위원,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I. 들어가는 말

언론분쟁은 언론사와 보도로 인한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은 언론분쟁을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법리적으로 보면, 언론분쟁은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충돌이라 할 수 있다. 헌법 21조는 1항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동조 4항에서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사건의 조정은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 충돌했을 때 절충점을 찾는 것이 요체이다.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조망해보면 언론의 자유에 실려 있던 무게중심이 점점 인격권의 보장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언론의 자유(혹은 표현의 자유)는 17세기 사상가 존 밀턴의 ‘아레오파지티카’에서 처음으로 이론적으로 정식화 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밀턴은 “언론의 자유를 죽이는 것은 진리를 죽이는 것이다”고 언론의 무제한적 자유를 주장했다. 밀턴의 사상은 당시 경제적 자유방임주의가 위세를 떨치던 당시의 사회분위기와 맞물려 19세기 중반까지 지배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19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언론의 사회적 역기능이 부각되면서 언론의 자유를 정당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는 ‘제한적 자유’로 보는 시각이 정착하게 됐다.

이러한 변화를 추동한 결정적 계기는 19세기 중반부터 급속히 진행된 언론의 기업화이다. 밀턴이 언론의 무제한적 자유를 주장하던 당시는 기업화된 언론이 없었기 때문에 언론자유는 일반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의미했고,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정치권력으로 가정되던 때이다. 즉 국가권력에 대한 일반시민의 언론자유를 강조했다기 때문에 '무제한적 자유'를 상징해도 별다른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개연성이 희박하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부터 언론은 자본주의 기업의 형태를 띠었기 때문에 언론의 무제한적 자유는 언론기업의 영업할 자유를 의미하게 되면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했다. 20세기 초 풀리처와 허스트가 이끌던 미국의 황색저널리즘은 기업화 된 언론에게 무제한적 자유를 부여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런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언론의 상업성은 필연적으로 선정성과 속보성을 추구하게 되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언론의 '제한적 자유'는 언론의 상업화와 맞물려 언론자유를 규정하는 지배적 틀로 자리 잡았다.

언론의 상업화가 앞서 진행됐던 미국 언론은 '제한적 자유'에 적응하는 속도도 빨랐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언론자유를 최대화 하기위한 미국 언론의 노력은 전문직업인주의(professionalism)의 정착으로 나타났다. 미국 언론의 전문직업인주의는 언론 기업의 상업적 요구와 시민사회의 공익성에 대한 요구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충시키고자 하는 직업적 이념이다. 이러한 전문직업인주의는 취재관행을 통해 구체화 되고, 언론윤리 강령이나 보도준칙을 통해 대내외적으로(기자집단 내부와 시민사회에) 고지된다. 갠즈(Gans, 1980)는 전문직업인주의를 기자들의 직업적 이익을 위한 준이데올로기(paraideology)로 봤고, 터크만(Tuchman, 1978)은 보다 초점을 좁혀 기자들의 취재관행을 소송과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적 의례'(strategic ritual)로 명명했다. 하지만 자본주의 언론기업이 상업성을 추구하는 것을 당연한 사실로 인정한다면, 기업의 상업적 요구와 공익성을 절충시키는 전문직업인주의의 확립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또 특수한 저널리즘적 의미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자들이 소송을 회피하는 것은 공익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은 상업적 손실이고 동시에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한 사회적 폐해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언론은 '제한적 자유'라는 새로운 환경에 지혜롭게 적응해

온 경우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한국 언론은 미국 언론과 다른 방식으로 기업화가 진행됐다. 한국 언론이 본격적으로 기업화되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정권이 출범한 60년대부터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때부터 87년 민주화까지 거의 30년을 언론은 정권의 정치적 통제와 경제적 특혜 속에서 기업적 성장을 이룩했다. 때문에 한국 언론은 기업화 수준에 맞는 취재 관행을 정착시키지 못하고 심각한 지체를 겪게 됐다. 정치적 통제를 자제하는 대가로 경제적 혜택을 준 박정권의 언론정책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언론은 탈정치적 사건중심 보도 관행을 정착시켰다. 탈정치적 사건중심보도 관행은 사회현상을 사건중심으로 단순 기술하면서 정치적 의미를 외면하는 관행이다. 이 관행 하에서 요구되는 보도기술은 매우 단순하다. 이 상태로 언론은 87년 민주화를 맞게 됐고, 이후 급속히 성장한 시민사회의 이의제기에 직면해 있다. 언론분쟁의 증가는 변화한 사회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취재관행의 후진성을 말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몇 년 새 언론현장에서 윤리강령 및 보도준칙 개정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개정의 핵심은 과거 선언적인 수준에 그쳐 있던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화 하는 작업이다. 그럼에도 아직 그 성과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언론의 신뢰도 하락이 언론의 상업성에 손상을 주는 지경이 된 현재의 상황에서 '법의 테두리'를 정확히 인식하는 취재관행의 정착은 언론의 상업성을 유지하는 '문화자본'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전문직업인주의의 시작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글은 최근의 언론분쟁에 자주 나타나는 분쟁의 쟁점을 통해 '법의 테두리'를 제시하고 관련된 취재관행의 문제점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현장기자의 위치에서 어떠한 취재행위가 보완되어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피해사례의 발생 배경과 취재관행

1. 오보의 개념과 발생원인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는 오보에서 생겨난다. 일반적으로 오보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보도를 의미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허위보도, 사실을 과장한 과장보도, 사실을 왜곡한 왜곡보도, 공정성을 훼손한 편파보도 등을 포괄한다. 정걸진(2008)은 오보를 “사실이면서 정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면서 진실한 보도를 제외한 모든 보도”로 정의한다. 이러한 규범적 정의는 바람직한 보도를 윤리적 차원에서 강조하는 효과가 있지만, 지시범위가 모호한 단점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다 지시범위가 분명하게 조작적 정의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보도”, “어떤 형태든 피해를 준 보도”로 초점을 좁혀 보았다.

오보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오보연구는 오보발생의 원인을 언론산업의 구조적 성격에서 비롯되는 원인과 기자들의 행위 수준에서 비롯된 원인을 동시에 지적하고 있다. 임병국(1990)은 오보발생의 원인을 언론산업의 속성에서 생기는 원인과 정보의 수집과 전달과정에서 생기는 원인으로 나누었다. 언론산업의 속성에서 생기는 원인으로 마감시간과 상업주의에 의한 경쟁을 꼽았고, 정보의 수집과 전달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인으로 오청, 오인과 같은 기자의 지각과정의 실수, 기자의 선입견, 편견, 조급성과 같은 심리적 결함, 기자의 경험미숙과 전문지식의 결핍 등을 들었다. 노광선(1995)은 오보의 원인을 기사작성 과정의 오기 또는 실수, 확인 소홀, 일방의견보도, 전문성결여 등과 같은 기자 개인에 의한 오보발생과 상업주의의 지나친 경쟁, 지나친 외신의존, 뉴스취재원의 실수나 부주의, 취재원의 고의적 정보조작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로 나누었다. 정걸진(2008)도 오보 발생의 원인을 기자의 개인적 미숙함과 언론의 산업적 속성과 관련된 내외적 구조적 요인으로 나누었다. 기자의 미숙성은 기자의 취재활동에서 실수뿐만 아니라 사건을 파악하는 능력의 부족, 전문지식의 부족, 편집과정에서의 확인 소홀 등을 꼽았다. 또 이와 달리 기자 개인에게 귀책사유를 적용할 수 없는 언론의 산업적 속성과 구조적 요인으로서는 마감시간의 존재와 상업주의 경쟁, 광고주의 압력, 권력의 간섭, 취재원의 고의적 정보조작 등을 꼽았다.

오보발생의 원인을 산업적이고 구조적인 요인과 정보 수집 및 전달과정에서 기자개인의 자질 문제로 양분하는 것은 오보발생의 원인을 추론하는 영역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산업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와 기자 개인의 문제는 엄격히 구별되지 않는다. 기자들의 취재관행은 언론의 산업적 속성에 적응한 결과이고, 기자들의 개별취재 행위도 취재관행의 구조적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귀